

# 2023년도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17.(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민아(분과위원장), 김성주, 김정숙, 손수호,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5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김태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33건(안건번호 제2023-195632호~19716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95632호~195635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안건번호 제2023-195636호~195655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95656호~195657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95658호~195678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4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324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3-20717호~2104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32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25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민아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60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5632호~19563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배포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광고 배너도 게시하지 않고 영

리를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게시자가 직접 자막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김준근 주임: 게시자 입장에서는 취미로 자막을 번역할 수도 있으며, 선의로 자막을 제작하는 사람들 중 한명 일수 있음.
- 김태일 주임: 일본어 공부를 한 사람들 중 실력을 과시하거나 블로그 유입수를 늘리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음.
- A 위원: 아직은 심의대상 게시물에 광고가 없지만 생길수도 있다는 것인가?
- 김태일 주임: 그러함. ■■■의 경우 구독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자막들은 토렌트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불법 복제물과 결합되어 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이 존재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95632호~195635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5632호~1956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5636호~19565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PDF 파일을 구매해서 다운 받으면 복제가 가능한가? 하나를 받아서 친구들과끼리 이용 가능한 것인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95636호~195655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95636호~19565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5656호~19565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 내용 중 일부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해당 부분은 기존 법원 판례 취지에 대하여 논리 전개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상호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님. 다만 기존 심의위원 분들 은 이러한 표현이 익숙하셔서 문제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임.
- D 위원: 검토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마치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B 위원: 심의위원께서 수정 의견을 주시는 경우 검토보고서 작성시 반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내부에서 검토를 통해 수정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95656호~19565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5656호~19565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95658호~195678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시정권고가 나가는 경우 몇 개의 형태가 있는가?
- 김준근 주임: 기본적으로 경고와 삭제 시정권고가 같이 나가지만, 도중에 삭제가 되는 경우 등 OSP에서 경고만 하는 경우도 있음.
- 김태일 주임: 심의전 삭제가 된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있음.
- D 위원: 그러면 사안 자체가 경고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경고가 나간 사례

가 있는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 C 위원: 경고가 누적되면 계정 정지를 하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웹하드의 경우 온라인보호부에서 대상을 추려서 매달 계정정지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다만 시정권고가 많이 나간 아이디가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95658호~19567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5658호~19567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95679호~19716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방

송, 출판/어문, 만화/웹툰, 영화, 음악, 게임,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더 년 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5788호(‘더 년 2’)는 2023.09.27.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70포인트에 판매중임.

(‘하이재킹’)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6714호(‘하이재킹’)는 2023.06.28. ~ 08.02. 방영한 미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60포인트에 판매중임.

(‘아라문의 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6957호(‘아라문의 검’)는 2023.09.09.부터 방영중인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40포인트에 배포중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3-195679호~19716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195679호~19716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95632호~195635호, 제2023-195636호~195655호, 제2023-195656호~195657호, 제2023-195658호~195678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95679호~19716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0717호~21040호(순번 1번~324번)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이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24.

분과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